

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[별표 2의4] <개정 2026. 3. 17.>

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(제35조의7 관련)

평가대상	평가항목
1. 자연환경복원사업 진행 중 보고한 추진 실적	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준수 여부
2.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 완료 후 보고한 추진실적	가.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 나. 평가 결과의 환류 정도 다. 기술 인력의 활용 정도

비고: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·방법과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비용의 차등
지원 기준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